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3386
----------	------

제 안 년 월 일 : 2025년 12월 17일
발 의 자 : 행 정 자 치 위 원 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우형찬 의원이 2025년 10월 20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241)과 김기덕 의원이 2025년 10월 20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296)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제333회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2025. 12. 17.)에서 일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 이유

- 관련 법령의 용어 표기에 맞도록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을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으로 붙여쓰기하고, 반복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약칭을 규정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등 각각 제출된 동일 제명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개정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청소년유해환경”,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나. 용어의 약칭을 규정하여 조문을 정비함(안 제7조, 안 제14조의3, 안 제19조).
- 다. 청소년 중독 예방 등을 위한 환경 조성 내용을 규정함(안 제14조의2).
- 라.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4조의3).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1항에 따라”를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학대를 말한다.

6.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48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교육청”을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4조의2의 제목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을 “(청소년 중독 예방 등을 위한 환경 조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독을 예방하기”를 “중독의 예방 및 치료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교육·홍보”를 “교육·상담·홍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예방”을 “예방 및 치료 관련”으로 한다.

3.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조사·연구
제14조의3을 제14조의4로 하고,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을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을 위하여 자치구, 교육청, 서울특별시경찰청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9조제2항제1호 중 “서울특별시교육청”을 “교육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 략) 2. "청소년"이란 <u>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1항에</u>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 4. (생 략) <p><u><신 설></u></p>	<p>제2조(정의)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 「<u>청소년 기본법</u>」 <p>제3조제1항에 따른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 4. (현행과 같음) 5. “<u>청소년유해환경</u>”이란 「<u>청소년 보호법</u>」 제2조제8호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학대를 말한다. 6. “<u>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u>”이란 「<u>청소년 보호법</u>」 제48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p><u><신 설></u></p> <p>제7조(청소년의 참여) ① (생 략)</p> <p>② 시장은 청소년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시정에 반영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능 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청소년의 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2. (생 략) 	<p>제7조(청소년의 참여)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2. (현행과 같음)

<p>3. <u>교육청</u> 및 자치구 청소년 정책 참여기구 간 네트워크 구축</p> <p>4. (생 략)</p> <p>③ · ④ (생 략)</p> <p><u>제14조의2(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 ① (생 략)</u></p> <p>② 시장은 청소년 <u>중독을 예방하기</u>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p> <p>1. (생 략)</p> <p>2.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u>교육 · 홍보</u> 및 정책개발 사업</p> <p><u><신 설></u></p> <p>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중독 <u>예방</u> 사업</p> <p><u><신 설></u></p>	<p>3. <u>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u></p> <p>4. (현행과 같음)</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u>제14조의2(청소년 중독 예방 등을 위한 환경 조성) ① (현행과 같음)</u></p> <p>② ----- <u>중독의 예방 및 치료를 -----</u>.</p> <p>1. (현행과 같음)</p> <p>2. ----- <u>교육 · 상담 · 홍보 -----</u></p> <p>3. <u>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조사 · 연구</u></p> <p>4. ----- <u>예방 및 치료 관련 -----</u></p>
<p><u>제14조의3 (생 략)</u></p>	<p><u>제14조의3(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을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u></p> <p><u>② 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을 위하여 자치구, 교육청, 서울특별시경찰청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u></p> <p><u>제14조의4 (현행 제14조의3과 같음)</u></p>

<p>제19조(구성) ① (생 략)</p> <p>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과 각 호의 사람이 된다.</p> <p>1. <u>서울특별시교육청</u>의 추천을 받은 사람</p> <p>2. · 3. (생 략)</p> <p>③ (생 략)</p>	<p>제19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u>교육청</u>----- -----</p> <p>2. · 3.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	--